

제3031호  
2023. 10. 11.

발행인 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 
편집인 : 홍보담당관 주재봉  
전화 : 3396-4955  
(http://www.junggu.seoul.kr)

자치법규

선	기관 의 장
람	

# 구 보

- 자치법규  
[입법예고]  
제2023-905호 :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..... 2
- 고 시  
제2023-56호 : 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 ..... 6

[입법예고]

-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-905호

이 조례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,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3년 10월 11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##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현행 조례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.12.31.字 만료 예정으로 연장 필요
-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.12.31.까지 연장하여 주차장 세입 세출 업무를 별도 관리하고, 주차장 및 주차 단속 관련 대민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: 조례안 제2조제2항 개정
  - 현행 존속기한 : 2018.1.1.~2023.12.31.(5년)
  - 연장 존속기한 : 2024.1.1.~2028.12.31.(5년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: 주차관리과장, 주소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(예관동, 중구청), 문의전화: 3396-6193, FAX: 3396-8869, 메일: lazy1114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  
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<http://www.junggu.seoul.kr>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 
●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55 / FAX.(02)3396-9022/3  
●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.  
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 
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람												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- 붙임 1.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 
 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2023- 호

###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특별회계의 설치) ① (생략) ②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	제2조(특별회계의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b>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/b> 다만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## 고 시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3-56호

### 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437호(2020.11.05.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된「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」에 대해「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10월 11일  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#### I 변경 결정 사유

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로 중복 결정된 서소문동 37 서울시립미술관의 합리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토지 경계를 변경하고 재설정함

#### II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

㉔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

1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변경 결정조서
  - 나.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변경 결정조서
    - 3) 공공·문화체육시설 변경
      - 가) 공공청사
        - 공공청사 변경 결정조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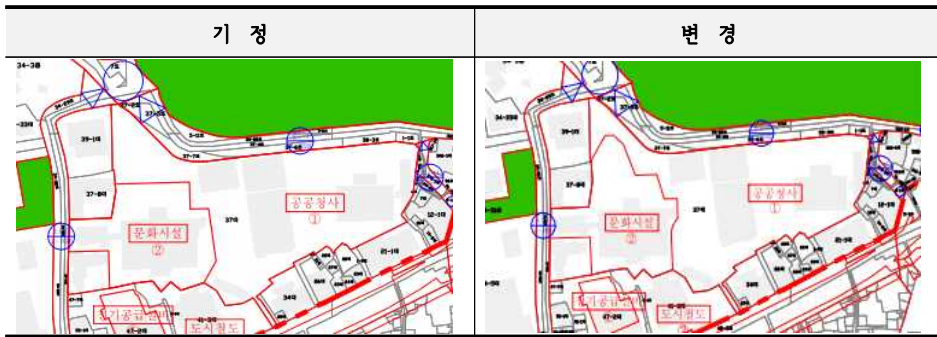
구분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(㎡)	최초결정일	비고
기정	공공청사	시청	중구 서소문동 37	25,420.9	2020.11.05.	중복결정 - 공공청사+문화시설 : 6,910㎡
변경			- 변경없음 -			중복결정 - 공공청사+문화시설 : 7,250.9㎡

다) 문화시설

■ 문화시설 변경 결정조서

구분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(㎡)	최초결정일	비고
기정	문화시설	미술관	중구 서소문동 37	6,910	2020.11.05.	중복결정 - 공공청사+문화시설 : 6,910㎡ ※ 공공청사 내 문화시설 (서울시립미술관)결정
변경		- 변경없음 -		7,250.9		중복결정 - 공공청사+문화시설 : 7,250.9㎡ ※ 공공청사 내 문화시설 (서울시립미술관)결정

III 지형도면



(※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 및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)

IV 기타사항

기타 고시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시관리국 도심정비과(담당자:강일용주무관, 02-3396-578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